

공 시 송 달 공 고

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서 등을 2회 등기송달 하였으나,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제 목 :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압류예정 통지 공시송달

2. 근거법규

- 가. 국유재산법 제32조
- 나. 국유재산법 제73조
- 다. 국세징수법 제41조
- 라. 국세기본법 제11조
- 마.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- 바.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

3. 공고기간 : 2017.07.21.~2017.08.04.(15일간)
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체 납 자			체 납 내 역	
징수결의번호	성 명	주 소	부과금액(원)	징수 과목명
110327161 외 1건	정*관	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발개등2길 **(북신동)	1,150,320	국유재산 사용료 및 가산금

5.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[☎ 051-559-3258]로 문의 바랍니다.

2017년 7월 21일

부 산 지 방 우 정 청